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18. 10. 23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12일

나. 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10. 2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-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-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제정 내용은
  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
  - 안 제2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청소년 가장,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계층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안전 취약가구로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4조~제6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 월 일

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#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.

다. 입법예고(2018. 10. 5. ~ 10. 11.): 의견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화재안전취약가구”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.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- 라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  - 마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  - 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
2. “주택용 소방시설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)**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)**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.

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.

**제6조(지원 신청)**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